

관세감면물품 수입신고전 심사제 운영에 관한 고시

(관세청 통관기획과, 042-481-7843)

관세청 고시 제2009-095호 (2009.08.20)

관세청 고시 제2010-042호 (2010.06.10)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과 그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라 관세감면을 받고자 하는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전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업체의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관세행정의 신뢰를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대상물품) 이 고시는 관세법과 그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이하 “관세법 등”이라 한다)에 따라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가 감면의 적정여부를 알고자 하여 수입신고전심사(이하 “수입신고전 감면심사”라 한다)를 신청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수입신고전 감면심사 신청 등) ① 이 고시에 따라 수입신고전 감면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관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관세사, 관세사 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로 한다.

② 수입신고전 감면심사의 신청은 관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당해 물품이 우리나라에 도착하기 전까지 할 수 있다.

③ 수입신고전 감면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수입신고전 감면심사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당해 물품의 용도·규격·특성 등 관세감면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통관예정지 세관장(수입통관 담당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상호·주소
2. 당해 물품의 품명·모델·규격 및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와 세율
3. 당해 물품의 감면 법적 근거와 감면율 및 감면액

- ④ 신청서를 접수한 세관장은 처리결과 통보 예정일등을 기재한 접수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⑤ 수입신고전 감면심사 신청인은 세관장의 감면심사 결과통보를 받기 전에 당해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 등으로 인하여 수입신고전 감면심사의 필요가 없어진 경우에는 제3항의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제4조(감면심사) ① 신청서를 접수한 세관장은 「관세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을 준용하여 감면 적정여부 및 감면율을 심사한다.

- ② 수입신고전 감면심사 신청에 대하여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③ 세관장은 제2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이내에 신청인에게 7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수입신고전 감면심사 자료보완 요청서(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세관장은 접수된 사안 중 당해 건의 법령해석 등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그 사유와 세관장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감면심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의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⑥ 세관장은 품목분류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처리기간내에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수입신고전 감면심사 지연사유 통보서(별지 제3호 서식)”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심사결과 통보) ① 세관장의 수입신고전 감면심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그 심사결과를 통보한다.

1. 적정 :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관세법 등 관련 감면규정상의 감면규격과 일치함이 확인되고 감면율이 적정한 경우
2. 부적정 : 감면규격이나 감면대상기관이 관세법 등 감면규정과 일치하

지 않는 경우로서 관세감면이 불가능한 경우

3. 부분적정 : 신청물품중 일부만 감면규격에 해당하는 경우

4. 기타 : 감면추천서등 요건구비가 충족되어야 관세감면이 가능한 경우와 기타 사유

② 세관장은 제1항에 의한 심사결과를 “수입신고전 감면심사 결과통보서(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심사가 불가함을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관련 법령의 개폐에 따라 감면심사의 실익이 없어진 경우

2. 물품의 특성상 감면적정 여부 심사에 현품검사가 필수적인 경우

3. 신청인이 제4조제3항의 보완요구 기한내에 요구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4. 제3조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와 제4조 제3항의 보완자료에 의하여도 감면적정 여부를 심사할 수 없는 경우

5. 기타 감면심사를 할 수 없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④ 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한 내용중 법령개정에 따라 통보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지체없이 “수입신고전 감면심사 처리결과변경 통보서(별지 제6호 서식)”를 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심사결과의 효력) ① 세관장의 감면심사 결과통보서는 신청인이 이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3조 제3항에 따른 통관예정 세관에 수입신고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② 감면심사 결과를 통보한 물품이 다음 각호의 사유로 다른 세관에 수입신고된 경우에 수입신고를 받은 세관장은 당해 감면심사 결과를 통보한 세관장에게 그 통보내용과 관련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세관장은 지체없이 해당자료를 수입신고를 받은 세관장에게 송부하

여야 한다.

1. 선적일정의 변경등에 따라 도착항이 변경된 경우

2. 기타 수입신고전 감면심사를 신청한 당해 세관에 수입신고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세관장은 수입신고된 물품이 이 고시에 의하여 관세감면이 적정한 것으로 통보된 물품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물품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하여 신속하게 감면승인 통관하여야 한다.

④ 관세감면이 적정한 물품으로 통보된 물품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통보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령의 개정으로 관세감면 대상물품 및 감면율 등이 달라지게 된 경우

2. 감면심사의 기초가 되는 거래관계와 거래내용이 달라지게 된 경우

3. 신청인의 허위자료 제출, 자료제출 누락 등으로 인하여 수입신고전 감면심사에 착오가 있는 경우

⑤ 이 고시에 의한 감면심사 결과통보서에 의하여 감면처리한 물품이 행정감사 또는 사후심사 등에 의하여 법령에 위반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를 추징하여야 한다.

제7조(보칙) ① 세관장은 “수입신고전 감면심사 처리대장(별지 제7호 서식)”을 비치관리하고 매 분기종료 익월 5일까지 “수입신고전 감면심사 처리내역 보고서(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하여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수입신고전 감면심사 절차에 대하여 이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민원사무처리예관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5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관세청 고시 제2009-095호(2009. 8.2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관세감면물품 수입신고전 심사제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01-044호, 2001.9.17)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고시 제2010-042호(2010.6.1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수입신고전 감면심사 신청서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상 호				성 명	
	주 소					
	통관고유부호				사업자등록번호	
	업무연락자 직책, 성명				전화번호	
신청 내용	감면근거조항				관세감면율	
	품 명				HS번호	
	모델·규격					
	단 가		수 량		금 액	
	과세가격(예상)				CIF US\$	
	감면물품의 용 도					
	확인·추천대상여부					
신청사유						
쟁점 및 참고사항						
수입신고 예정일				수입신고 예정세관		
<p>「관세감면물품 수입신고전 심사제 운영에 관한 고시」 제3조제3항에 따라 수입 신고전 감면심사를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 ○ 세 관 장(출장소장) 귀 하</p> <p>첨부서류 : 물품 설명자료(용도·규격·특성 등)</p>						
〈접수증〉			접수번호 :			
신청인 :						
<p>「관세감면물품 수입신고전 심사제 운영에 관한 고시」 제3조제3항에 따른 수입신고전 감면심사 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세관 과장 (서명 또는 인)</p> <p>- 처리결과통보 예정일 :</p> <p>- 접수담당자 : 과 ○ ○ ○ (전화 :)</p>						

[별지 제2호 서식]

수입신고전 감면심사 자료보완 요청서

신청(접수)일		접수번호	
신 청 인			
보완요구기한	20 . . (통보일로부터 일)까지		
보완요구사유			
보완하여야할 자료 내역			
<p>귀하(사)의 수입신고전 감면심사 신청에 대하여 「관세감면물품 수입신고전 심사제운영에 관한 고시」 제4조제3항에 따라 자료의 보완을 요청 하오니 보완요구 기한내에 해당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 세 관(출장소) (과)장</p>			

[별지 제4호 서식]

수입신고전 감면심사 결과 통보서

통보번호 200 - 호

신청(접수)일		접수번호	
신청인	주소		
	성명		
심사결과		적정(), 부적정(), 부분적정(), 기타()	
결정 이유			
신청물품 내역	품명		모델·규격
	HSK		과세가격
	감면근거조항		관세감면율
	참고사항		
<p>귀하(사)의 수입신고전 감면심사 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를 「관세감면물품 수입신고전 심사제 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제2항에 따라 통보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 세 관 장</p>			
<p>※ 유의사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이 통보서는 신청인이 이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통관예정 세관에 수입신고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이 통보서가 「관세감면물품 수입신고전 심사제 운영에 관한 고시」 제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이 통보서에 의하여 감면처리한 물품이 행정기관의 감사나 사후심사 등에 의하여 법령에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게 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5호 서식]

수입신고전 감면심사 처리불가 통보서

신청(접수)일		접수번호	
신청인			
당초심사예정기한	20 . . .		
심사불가사유			
<p>귀하(사)의 수입신고전 감면심사 신청건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유로 감면심사가 불가함을 「관세감면물품 수입신고전 심사제 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제3항에 따라 통보합니다.</p> <p>20 년 월 일</p> <p>○ ○ 세관(출장소) (과)장</p>			

[별지 제6호 서식]

수입신고전 감면심사 처리결과 변경통보서

변경통보번호 20 - 호

신청인 주소 및 성명				
신청물품 내역	품명		규격	
	HSK		과세가격	
	적용법조			
	참고사항			
당초 결과통보 내용				
결과통보일		통보번호		
심사결과 통보내용	적정(), 부적정(), 부분적정(), 기타()			
통보내용중 변경 사항				
변경 사항	변경전			
	변경후			
변경 사유				
<p>「관세감면물품 수입신고전 심사제 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제4항에 따라 귀하(사)의 수입신고전 감면심사 신청에 대한 우리세관의 당초 수입신고전 감면심사 결과통보서 중 위와 같은 사유로 변경통보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 세 관 장</p>				
※ 붙임 : 당초 결과통보서(20 - 호) 사본 1부.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7호 서식]

수입신고전 감면심사 처리대장

접수 번호	접수일자	신청인	품 명	HS부호	감면조항	통보일자	통보내용	비 고

※ 통보일자, 통보내용 및 비고란을 제외한 사항은 신청서 내용을 기재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8호 서식]

수입신고전 감면심사 처리내역 보고서

(○ ○ 세관 20 년도 /분기)

1. 총괄표

(건, 백만원)

구 분	전기미결	당기접수	당기처리	연간처리누계	당기미결
건 수					
과세가격					
관세감면액					
법령별 건 수	관세법				
	타법령				

2. 당기처리 현황

(건, 백만원)

구 분	합 계	적 정	부적정	부분적정	기 타
건 수					
과세가격					
관세감면액					
법령별 건 수	관세법				
	타법령				

3. 당기처리 주요 내역

- 당기처리에 대한 주요내역을 요약기재하되
- 시사성이 있거나 중요사항등 특이사항과 기타 참고사항 포함

※ 「관세감면물품 수입신고전 심사제 운영에 관한 고시」 제7조 참조
(해당 분기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보고를 생략할 것)